

해양경찰청 기간제근로자[청사방호직] 채용 공고

해양경찰청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청사방호직)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성실하고 능력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년 5월 14일
해양경찰청장

1. 모집인원 (기간제근로자)

- 채용 분야 : 기간제근로자(청사방호직)
※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 종료시 별도 연장 없이 근로계약 자동종료
- 모집 인원 : 14명(일근 2명 / 교대근무 12명)

2. 채용 직종 및 근무지역

직 종	근무형태	인원	업무내용	근무예정지역
기간제 근로자 (청사방호)	일근	2명	해양경찰청 청사방호·경비업무 지원 및 대민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130 해양경찰청
	교대근무	12명	(민원인 응대 및 주차관리 등)	

3. 채용 절차 및 일정

- 채용 절차
 - 가. 서류전형(1차) : 소극적·적극적 서류전형을 통한 적격심사
 - 나. 면접시험(2차) :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및 최종 합격자 결정

○ 채용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공고기간	2024. 5. 14.(화) ~ 5. 24.(금) 18:00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원서접수	2024. 5. 14.(화) ~ 5. 24.(금) 18:00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민원실)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 인터넷 또는 택배로는 접수 불가 ▶ 접수마감 : 5.24(금) 18:00까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안내	2024. 5. 29.(수)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개별 통보(서류전형 합격자)
면 접	2024. 6. 3.(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개별 통보(서류전형 합격자)
면접 합격자 발표	2024. 6. 5.(수)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개별 통보 (합격자에 한하여 신원조사 후 최종합격자 결정)
신규채용	7월 중	합격자 채용일 개별통보 ※ (일반)채용 신체검사서 1부 제출(최종합격자에 한함)

※ 상기 일정은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4. 응시 자격 요건

○ 자격요건 등

-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복수 국적을 포기 해야함)
- 해양경찰청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 자

❖ 가족 채용을 제한받는 공직자의 범위(이해충돌방지법 §11①)

- 소속 고위공직자 /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3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해야 함

○ 「해양경찰청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17조 및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해양경찰청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17조(채용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요건 및 우대요건

구분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기간제 (청사방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자격) 방호·경비 및 보안 등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분야 :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등에 따른 방호·경비 및 보안 관련 업무 및 경찰공무원·경호공무원·직업군인(부사관 이상)·교정직 공무원 경력 - (우대사항) 아래의 자격 소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비업법」에 따른 일반경비지도사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무도단증 2단 이상 보유자

※ 서류전형시에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가점 사항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 분	부가 점수
법정 가점	관련 법령에 따라 만점의 5~10%
사회 형평 가점	「국가유공자법」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만점의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유리한 가점만 적용)

5. 선발방법

○ 1차 심사 : 서류전형

- 자기소개서 및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 평가기준
 - ① 자기소개서의 충실도 ② 우대요건 가산사항 ③ 국가 및 지자체, 기업체 등에서 관련 업무 경력
 -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선정하며, 서류전형 결과 동점자 발생하여 3배수 초과시 동점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
 - ※ 서류전형 지원자가 3배수에 미달할 경우는 결격자를 제외하고 합격자로 결정
 - ※ 우대요건 관련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공고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서류전형 심사기준>

1. 자기소개서(90점)
2. 우대요건(10점) : 일반·기계경비지도사(5점), 무도단증 2단 이상(5점)
3. 가산사항(10점) : 취업지원대상자(10점 또는 5점) * 가산사항은 서류전형 만점 배점 외 추가 기산

○ 2차 심사 : 면접시험

- 서류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 평가기준 : 정신자세, 품행, 책임·성실성, 지식, 직무이해, 의사표현력 등
- 면접결과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면접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고득점을 합격자로 결정
- 합격자 중 동점자 발생시 ① 1차 서류전형 점수가 높은 자, ② 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많은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 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5. 14.(화) ~ 5. 24.(금) 18:00 <11일간>
- 접수처 :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
 - 주소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송도동3-8)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 기간제근로자(청사방호) 채용담당자 앞
 - 전화 : 032-835-2916
 - 약도 :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확인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및 우편 제출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
※ 인터넷 또는 택배로는 접수 불가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 이내 소인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
-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자기소개서 1부 <별지 2호 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3호 서식>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2부 <별지 4호 서식>
 - 가족채용 제한여부 확인서 1부 <별지 5호 서식>
 -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별지 6호 서식>
 - 경력증명서 1부(필수제출)
※ 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미기재시 경력 미인정**)발급기관 연락처 기재 必
 - 병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채용 신체검사서 1부(최종합격시 제출)
 - 기타 가산·우대요건 등 서류전형 평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 자격증, 경력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서류 등
※ 모든 제출자료는 견출지, 스템플러 등을 사용치 마시고 집게 등을 이용하여 편철
※ 서류제출 시 [붙임2] 서류봉투 곁면 부착

7. 근무조건

○ 신분 : 기간제 근로자

○ 채용기간 : 2024. 7. 1. ~ 2025. 6. 30.(1년)

※ 근로계약기간 종료로 별도 연장 없이 근로계약 자동종료

○ 임금 : 직무등급제에 따른 단계별 차등 임금제

○ 근무방법 : 일근, 교대근무

급여체계

1. 기본급 : 직무등급 2등급 1단계 급여(2024년 기준 2,040,530원)

2. 정액수당 : 급식비 140,000원/월

3. 기타

- 명절상여금(년 1,100,000원), 복지포인트 등 수당 별도 지급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 직무의 범위

<청사방호>

- 인원 및 차량 출입 관리, 물품 반입 · 반출 통제 및 검문검색
- 테러 예방 및 진압 활동 지원

<경비업무지원>

- 경비구역 내 질서 유지, 시설물 안전 위해요소 확인 및 조치
- 순찰 및 주차질서 유지를 위한 지원
- 특이사항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초동조치, 결과보고 등

<민원업무>

- 공식 행사 및 업무수행 시 의전 지원
- 기관 방문객(민원인) 안내 및 응대

<기타>

- 그 밖에 기관의 경비 · 방호 · 민원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유의사항

-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응시요건에 맞는지를 잘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된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허위기재, 기재착오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채용된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채용연기가 불가하므로 학업(재학생) 등으로 채용 유예는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 현황, 합격선(커트라인)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제출서류 진위 확인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 및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 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재 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이후 정규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 채용시 가산점 등 혜택도 없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5일 전까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 ☎ 032-835-2916)로 문의 바랍니다.

9. 채용서류의 반환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되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채용이 확정된 자이거나, 본 공고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 또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 기관이 부담하나 특수취급우편물(등기우편 등)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구직자가 부담함을 알려드립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응시자 제출 서류

지원분야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기간제근로자 (청사방호)			

■ 작성 및 제출 목록(총괄표)

구분	작성여부
1. 응시원서 (필수)	
2. 자기소개서 (필수)	
3.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필수)	
4.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2부(필수)	
5.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필수)	
6.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필수)	
7. 경력증명서 1부(필수)	
8. 병적증명서 1부(해당자만)	
9.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만)	
10. 기타 우대요건 등 서류전형 평정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당자만)	
11. 채용 신체검사서 1부(최종합격자만)	최종합격시

- * 내용을 작성한 항목에 대하여 작성여부란에 “O” 표시
- * 위 순서대로 첨부하여 주시고, 좌측상단에 집게로 고정(필요시 추가서류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별지 1>

응시원서

1. 인적사항

응시분야	기간제근로자(청사방호)	응시번호*	채용담당자가 기재함
성명	(한글)	병역사항	<input type="checkbox"/> 필 <input type="checkbox"/> 미필 <input type="checkbox"/> 면제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한자)	응시분야	<input type="checkbox"/> 일근 <input type="checkbox"/> 교대 *중복 선택 가능
현주소 (거주지)			
연락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비상연락처)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복수국적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2. 자격사항

* 지원직무 및 우대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을 기입해 주십시오.

자격증명	자격번호	발급기관	취득일자	자격증명	자격번호	발급기관	취득일자

3. 경험 혹은 경력사항

*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소속	직무	근무기간	직무내용
<input type="checkbox"/> 경험 <input type="checkbox"/> 경력				
<input type="checkbox"/> 경험 <input type="checkbox"/> 경력				
<input type="checkbox"/> 경험 <input type="checkbox"/> 경력				

* 직무활동, 동아리/동호회, 재능기부 등 직무와 관련된 주요 활용을 서술하여 주십시오.

*응시번호는 미기재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지원자 : _____ (인)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워드 또는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응시원서』는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함.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② 현주소 및 연락처(핸드폰)은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 응시원서 접수사항, 면접시험 수험번호 등은 핸드폰 문자메시지 통보 예정 >
 - ③ 자격 : 관련 자격증명을 기재
 - ④ 경력 : 관련 근무경력을 기재

<별지 2>

자 기 소 개 서

응시분야	성명	생년월일
청사방호		· · ·

* 작성요령

- 제시된 소제목(주제)을 바탕으로 작성자 본인의 역량을 기술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 워드프로세서, 자필을 사용하여 작성 (신명조, 13p)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

응시취지 및 응시분야에 대한 소견

(지원동기 및 포부)

학업 및 경험(경력)

(성취도 및 활동내용)

특기사항

(장점, 보유자격 및 기술 등)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

※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서명합니다.

<별지 3>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해양경찰청에서 시행하는 기간제근로자(청사방호) 채용 시험의 응시자로서,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

해양경찰청장 귀하

<별지 4>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1)

1. 인적사항

성명		주민번호	
주소			

2. 정보조회·제공·활용목적 및 범위

- 상기 본인이 작성한 동의서는 해양경찰청 기간제근로자(청사방호)채용 등을 위해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 정보가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또한 채용과 관련하여 본인과 관련된 정보를 조회·활용하여 채용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국가중요시설 출입) 나급
 - 정보범위 : 기본정보, 신원조회, 자격조회, 경력조회, 범죄경력조회 등
- 그 외 정부(행정정보공동이용망),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전산시스템 정보를 해양경찰청에서 요청·조회·활용하여 채용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정보범위 : 기본정보, 신원조회, 자격조회, 경력조회, 범죄경력조회 등

3. 동의서 유효기간 : 해당 채용시험 관련 자료 폐기 시까지

2024. . .

성명 :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 개인정보동의서는 모든 사업 신청자에 대해 작성, 제출하며 반드시 신청자 본인의 자필서명 확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본인은 공직인사에 있어 인사담당기관이 본인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5조의 규정 등에 따라 인사담당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의 복사본으로 인사검증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4년 월 일

□ 본인 (*는 필수 입력 사항임)

- | | | | |
|------------|------|----------|--|
| ▪ 성명 * | (서명) | ▪ 생년월일 * | |
| ▪ 자택전화 * | | ▪ 휴대전화 * | |
| ▪ e-mail * | | | |
| ▪ 직장 | | ▪ 직위 | |
| ▪ 직장전화 | | ▪ 연락팩스 | |

□ 인사검증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 출입국 및 국적자료 ----- 법무부

<별지 제5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

<별지 제6호>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응시분야	생년월일	성명
기간제근로자(청사방호)		

목록	해당여부
① 피성년후견인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부정 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에 동의합니다.

2024. . .

성명 : (서명)

해양경찰청장 귀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반환을 원할 경우 작성)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응시번호
주 소		
반환장소 (위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4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붙임1] 면접시험 기준표 및 평정표

가산점 인정 무도단체 현황

대한체육회 가맹단체(10)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카라테연맹	대한택견회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주짓수회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49)

한국 해동검도연합회	대한검도연합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K3세계국무도총연맹	한국무예진흥원
대한무에타이협회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ITF태권도협회
세계태권무도연맹	대한프로태권도협회	대한특공무술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국제당수도연맹	대한특공무술연맹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유술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합회
대한민국합기도회	대한국술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대한호국특공무술총연합회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총협회	재남무술원
KOREA합기도중앙협회	국술원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용무도협회	세계용무도연맹
대한기도회	대한합기도총연맹	세계합기도협회
(사)한국권투협회	(사)한국킥복싱협회	대한특전무술협회
경찰무도교육원	대한합기도협회	특전사 특공무술
대한해동검도협회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1)

택견보존회

[붙임2] 등기우편 발송 시 서류봉투 곁면에 부착하여 반드시 기관 주소 발송

[보내는 사람]

응시구분	기간제근로자 (청사방호)
성명	
휴대폰	



**2024년 해양경찰청 기간제근로자(청사방호) 채용 제출서류 재중
(관계자 외 개봉금지)**

※ 제출서류는 '24. 5. 14.(화)~5. 24.(금) 18:00까지 방문 또는 우편접수(소인분에 한함)

[받는 사람]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
기간제근로자(청사방호)채용 담당자 앞

☎ [032] 835 - 2916

등기 발송증 부착

2 1 9 9 5